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8 - 35 - 383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8. 7. 11.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0,000,000원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정보가 노출되었다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노출신고(2018.1.16.)가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KISA)에 접수됨에 따라, 피심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2018.3.22. ~ 3.23.)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 판매 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018. 3. 22. 기준으로 89,519건의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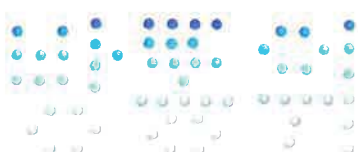
〈참고 3〉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구 분	항 목	수집기간	건수
회원가입	[필수] 이름 또는 별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17.3.17. ~	85,519건
	- 계정 연동 : ID, 이메일주소 등		
	- 계정 연동 : mid, 프로필 이름, 프로필 이미지		
상품구매	주문자명,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나. 개인정보 노출 규모 및 경로

(1) 개인정보 노출규모

피심인이 ‘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 약 1,325명이 중설 서버의 캐시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었다.



〈참고 4〉 피심인의 개인정보 노출 현황

구 분	노 출 항 목	건 수
회원	이름 또는 별명, 생년월일,이메일 주소	1,325명

* 노출인원 1,325명(이메일 중복 가입자 106명, 가입 시 이메일 주소와 다른 가입자 1,219명)

(2) 노출 경로

피심인은 2018. 1.10. 18: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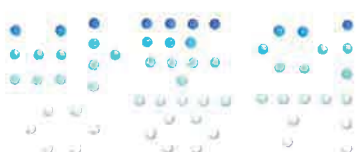
상품판매(2018.1.15.) 시 온라인스토어() 접속자 수 증가를 예상하여 기존 운영하던 웹서버 9대에 추가 서버(10대)를 증설하였으나 총 19대의 웹서버(호스트네임 : 312. ~ 320.)에 설정한 캐시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인해 2018.1.10.~2018.1.16. 사이에 신규 가입한 회원 중 가입단계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외부에 노출되었다.

(3) 노출 신고

피심인은 2018.1.12. 고객센터에 회원가입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또는 별명, 이메일 주소)가 표시된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18.1.15. 서비스 장애 원인 추적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를 인지하고 2018.1.16.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에 개인정보 노출을 신고하였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노출 사실을 공지하고 노출회원 대상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운영 중인 웹사이트() 접속 속도 개선을 위해 기존 웹서버 9대에 웹 서버 10대를 증설하고 시험서버 1대를 포함하여 총 20대의 서버를 운용하면서 설정한 캐시 소스코드 오류로 인해 2018.1.10.~2018.1.16. 사이에 신규 가입한 회원 중 가입단계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외부에 노출되었다.

캐시 오류 수정 전	캐시 오류 수정 후
<pre> nginx fastcgi cache 적용 add_header X-Cache \$upstream_cache_status; set \$is_mobile 'p'; // 모바일 여부 체크 if (\$http_user_agent ~* ~~~) { set \$is_mobile 'm'; } // 로그인 여부 체크 if (\$http_cookie ~* "wordpress_logged_in") { set \$logged_in 'login'; set \$skip_cache 1; } fastcgi_cache_bypass \$skip_cache; fastcgi_no_cache \$skip_cache; // 캐시 key 만들기 fastcgi_cache_key "\$scheme\$request_method\$host\$request_uri\$is_mobile"; </pre>	<pre> nginx fastcgi cache 적용 add_header X-Cache \$upstream_cache_status; set \$is_mobile 'p'; // 모바일 여부 체크 if (\$http_user_agent ~* ~~~) { set \$is_mobile 'm'; } // 로그인 여부 체크 if (\$http_cookie ~* "wordpress_logged_in") { set \$logged_in 'login'; set \$skip_cache 1; } // 장애 인지 후 조치 특정 url에 대해서는 캐시 안하도록 설정추가 if (\$request_uri ~* "user_regist") { set \$skip_cache 1; } fastcgi_cache_bypass \$skip_cache; fastcgi_no_cache \$skip_cache; // 캐시 key 만들기 fastcgi_cache_key "\$scheme\$request_method\$host\$request_uri\$is_mobile"; </pre>

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4. 2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 하였으며, 피심인은 2018. 5. 18.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5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고시 제4조제9항의 입법 목적은 개인정보 유·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에러, 오류 상황이 처리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심인이 홈페이지 에러, 오류 등의 위험요소를 분석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지 않아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1,325건이 공개(노출)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5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 5〉 피심인의 위반사항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5호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행위(고시§4⑨)

IV. 시정조치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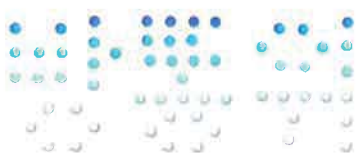
1. 시정명령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7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참고 6〉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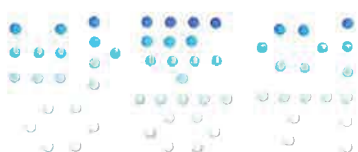
특별히 가중·감경할 사유가 없어 기준 금액을 유지한다.

〈참고 7〉 과태료 산출내역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8①2호	1,000만원	없음	없음	1,0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과태료)제1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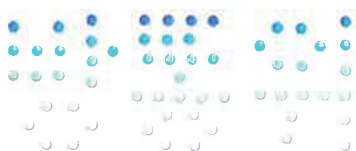
위 원 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 원 김 석 진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고 삼 석

